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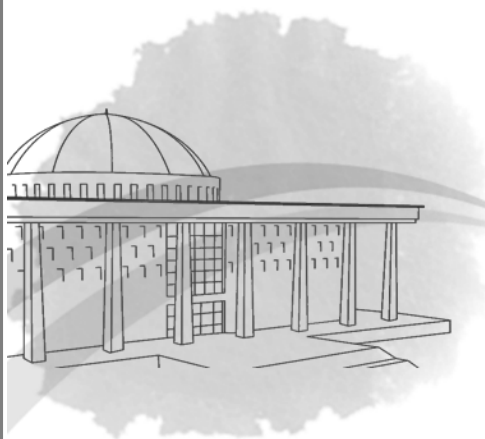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김광호	6788-5186

목 차

— i —

(3) 국민의견 수렴 · 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4
---	----

Ⅰ.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1.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가. 2026년 주요 편성방향

-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교육난제, 미래 교육의제, 교육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견수렴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센터 예산을 증액하였음.

나. 주요 편성 특징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연차별 적용을 위한 교육연구센터 예산을 200백만원 증액하였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용역비 67백만원,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당 및 운영 지원 용역비 등 28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호사 인건비의 현실화 등을 위해 상용임금 22백만원,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홍보비 160백만원을 증액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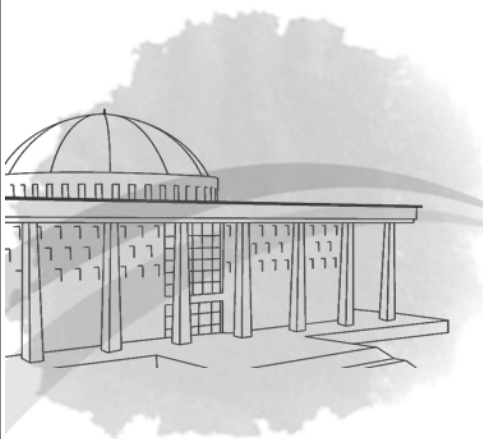
< 국가교육위원회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수정)		(B-A)	%
▣ 총지출	10,342	10,342	10,151	△191	△1.8
◦ 예산	10,342	10,342	10,151	△191	△1.8
【세부사업】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617	4,456	△161	△3.5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3,262	3,262	3,411	149	4.6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546	546	568	22	4.0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17	1,917	1,716	△201	△10.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II.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0원임.

2) 세출예산안

가. 개요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전체 운용 규모는 10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
총계(예산)	10,342	10,342	10,151	△191	△1.8
(총지출)	10,342	10,342	10,151	△191	△1.8
I.예 산(일반회계)	10,342	10,342	10,151	△191	△1.8
(총지출)	10,342	10,342	10,151	△191	△1.8
1.일반회계	10,342	10,342	10,151	△191	△1.8
▪ 인건비	3,262	3,262	3,411	149	4.6
▪ 기본경비	2,463	2,463	2,284	△179	△7.3
▪ 주요사업비	4,617	4,617	4,456	△161	△3.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1.8%) 감액된 101억 5,1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이 중 인건비 34억 1,100만원, 기본경비 22억 8,400만원을 제외한 44억 5,600만원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음.

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1) 신규사업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신규사업은 없음.

(2) 종료사업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종료사업은 없음.

(3) 계속사업

가) 증액사업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5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음.

나) 감액사업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5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없음.

2. 일반회계

1) 세입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0원임.

2) 세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출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업비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개임.

□ 4개 세부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1.8%) 감액된 101억 5,100만원임.

< 2026년도 사무처 예산안 내역(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A)	2025 추경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9,382	10,342	10,342	10,151	△191	△1.8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424	4,617	4,617	4,456	△161	△3.5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792	3,262	3,262	3,411	149	4.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475	546	546	568	22	4.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690	1,917	1,917	1,716	△201	△10.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특별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성과 미비에 따른 정책연구비 등 총 737백만원 감액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센터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총 57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100만원(3.5%) 감액된 44억 5,600만원임.
- 인건비는 34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
- 기본경비는 ‘25년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집행률 등이 고려되어 총 3억 6,100만원 감액하였고 변호사 인건비 현실화, 홍보비 등이 반영되어 1억 8,200만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7,900만원 감액된 22억 8,400만원임.

3)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를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으로 정하였고, 비전은 ‘희망을 찾는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교육위원회는 1개의 전략목표(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1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1.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I-1. 교육행정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III. 검토 의견



1. 세출

<일반회계>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¹⁾

-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비는 이전의 집행실적과 비교한다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동 예산의 집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와 교육훈련 경비 등 기본행정경비 및 소규모 전산운영경비(전산 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PC 교체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100만원(10.5%)이 감액된 1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 문의: 02-6788-5186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17	1,716	△201	△10.5
· 일반수용비(210-01)	473	317	△156	△33.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	64	30	88.2
· 임차료(210-07)	167	186	19	11.4
· 유류비(210-08)	29	18	△11	△37.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58	△99	△63.1
· 일반용역비(210-14)	374	438	64	17.1
· 관리용역비(210-15)	244	288	44	18.0
· 국내여비(220-01)	55	53	△2	△3.6
· 국외업무여비(220-02)	58	55	△3	△5.2
· 사업추진비(240-01)	29	28	△1	△3.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8	36	△2	△5.3
· 일반연구비(260-01)	50	5	△45	△90.0
· 자산취득비(430-01)	208	70	△138	△66.3
· 무형자산(440-00)	-	100	100	순증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나) 검토의견 : 면밀한 정책홍보 컨설팅 계획 수립 필요

-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²⁾,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는 온라인뉴스모니터링, 정책홍보 컨설팅 등 용역, 재무결산 용역,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3억 7,440만원) 대비 6,400만원(17.1%) 증액된 4억 3,84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일반용역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일반용역비	374	438	64	17.1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일반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뉴스모니터링 등으로 5,640만원, 정책홍보 컨설팅 등 용역으로 1억 6,000만원, 재무결산 용역으로 2,200만원, 온라인콘텐츠 제작으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일반용역비 편성내역 >

구 분	산출내역	
	‘25예산	‘26예산안
일반용역비 (210-14)	374,400천원 • 온라인뉴스모니터링 등 : 210,000원*20개 *12월=50,400천원 • 정책홍보 컨설팅 제공 : 30,000,000원*1식 =30,000천원 • 재무결산 및 행사 용역 : 22,000,000원*2식 =44,000천원 • 온라인콘텐츠 제작 : 50,000,000원*5회 =250,000천원	438,400천원 • 온라인뉴스모니터링 등 : 235,000원*20개 *12월=56,400천원 • 정책홍보 컨설팅 등 용역 : 40,000,000원 *4회=160,000천원 • 재무결산 용역 : 22,000,000원*1식 =22,000천원 • 온라인콘텐츠 제작 : 50,000,000원*4회 =200,000천원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이 중 정책홍보 컨설팅 등 용역비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 출범에 따른 행보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컨설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4회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3,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433.3%) 증액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홍보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를 2023년부터 계속해서 편성하였는데, 2023년과 2024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여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³⁾, 2025년도의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이 중

3)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홍보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를 2023년부터 계속해서 편성하였는데, 출범 초기 홍보 강화를 위해 2023년과 2024년도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200만원(1회)을 집행하였는바, 이전의 집행 실적과 비교한다면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단가 및 횟수의 상승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도~2025년도 정책홍보 컨설팅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비고
2023	10		10	0	-	-	0	
2024	20	-	20	0	-	-	0	
2025	30	-	30	22	-	-	73.3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비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23		'24		'25		'26 예산안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단가	10,000	없음	20,000	없음	30,000	22,000	40,000
횟수	1회		1회		1회	1회	4회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편집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 2026년도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 계획을 문의한 결과 동 위원회의 2기 출범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컨설팅 추진으로 답하였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2기 위원회를 구성 중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무 3가지 중 하나이며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10월말 기준 아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바, 2026년도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비는 이전의 집행실적과 비교한다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동 예산의 집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⁵⁾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성 예산을 담고 있는 유일한 세부 사업인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동 사업에 포함된 사업 내역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3년, 2024년 불용되었고, 2025년의 경우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가 수행된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증액하였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⁶⁾에 따른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정회의 등 운영”,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5) 문의: 02-6788-5186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6,100만원(3.5%)이 감액된 4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424	4,617	4,456	△161	△3.5
○ 법정회의 등 운영	1,215	1,133	881	△252	△28.6
○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504	2,467	2,536	69	2.7
○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223	477	370	△161	△43.5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482	540	669	129	19.3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나)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예산편성체계 개편 필요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총 4개의 세부사업(인건비, 기본경비 2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격별 비중은 인건비 33.6%, 기본경비 22.5%, 주요사업비 43.9%임.

<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6예산안	비중(%)
총계		10,151	100.0
인건비	(7004-100)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3,411	33.6
기본경비	(7019-20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568	5.6
	(7019-25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716	16.9
	소계	2,284	22.5
주요사업비	(7031-3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456	43.9

자료: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은 위원회의 법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을 담고 있는 유일한 세부사업으로, ① 법정회의 등 운영, ②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③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④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등 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의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6 예산안	내내역사업	소관 부서
계	4,456		
법정회의 등 운영	881	전체회의 운영 200 전문위원회 운영 169, 특별위원회 운영 201, 기타 회의 운영 69, 미래교육토론회·워크숍 등 198, 교육분야 국제 협력 지원 45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536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1,000, 정책연구 636	교육발전총괄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900	교육과정정책과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370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130,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129,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111	교육과정정책과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669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557, 국민의견수렴 112	참여지원과

자료: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그러나 예산의 편성 및 심사는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이처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범위가 각각 다른 다양한 내역사업들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이라는 단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특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법정회의 등 운영’은 3개 과에서 각각의 사업수요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되는 반면,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및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별로 소관 부서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편성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자체 조정이 용이해져 사업수요에 따라 잦은 내역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용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취지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세부사업명은 그 명칭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대상·목적·방법을 포함하여 간명하고 함축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고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주요 업무(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이 ‘중앙관서의 장’⁷⁾의 지위에

7)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있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의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예산편성체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기관의 핵심 기능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⁸⁾ ‘전면적인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그보다 단기(최근 6~7년 주기)⁹⁾로 이뤄지는 등 사업별로 추진 목표와 일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사업이 자체 수요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예산편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사업 내역을 그 목적과 내용, 사업 간 연계성, 업무 효율성 및 소관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재구조화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사 성격의 위원회는 물론 교육부 소속기관의 경우도 포괄적인 명칭의 단일 세부사업만으로 주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

8)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9)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2022년 개정

< 교육부 소속기관의 예산편성체계와 비교(2026년도 예산안 기준) >

기관명	'26예산안* (백만원)	주요사업비(세부사업명)
국가교육위원회	10,151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국사편찬위원회	24,123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정보화)
국립특수교육원	20,496	•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운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575	※ 별도 세부사업 없이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학술원사무국	8,209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1,016백만원) ¹⁰⁾ ※ 인건비+기본경비 비중이 87.6%(7,193백만원)로 대부분임
중앙교육연수원	8,349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국립국제교육원	173,151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 학생교육 교류 지원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 글로벌역량지원센터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 '26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예산 규모임

10) 그밖에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의 세부사업인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의 내역사업 중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사업을 소관하고 있음.

(2)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행 등을 위해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11억 3,300만원) 대비 2억 5,200만원(△22.2%) 감액된 8억 8,100
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456	△161	△3.5
○ 법정회의 등 운영	1,133	881	△252	△22.2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은 교육
분야 국제 기관 협력과 해외 선진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한 교육
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교육분야 추세파악, 우리의 교육과 비교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육제도를 정립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5,000만원) 대비 500만원(10%) 감액된 4,500만원이 편
성되었음.

< 2026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456	△161	△3.5
○ 법정회의 등 운영	1,133	881	△252	△22.2
-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50	45	△5	△10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동 사업은 교육분야 국제 기관 협력 및 해외 선진교육현장 방문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220-01)로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예산안(비목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50	45	△5	△10
· 국외업무여비(220-01)	50	45	△5	△10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동 사업은 교육분야 국제 기관 협력과 해외 선진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한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교육분야 추세파악, 우리의 교육과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육제도 정립을 위한 것으로, 중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선행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의 운영·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요구내용 >

구 분	내 용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u>최초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6.3. 수립 예정, 2027~2036)</u> 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필요
선행모델 국가 방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교위의 선행 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운영·관리 방안 논의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주 : * 정당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원 및 사회적 파트너로 구성

□ 한편,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우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도의 경우 8월 말 기준 미집행된 상태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도~2025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비고
2023	41	-	41	0	-	41	0	
2024	41	-	41	0	-	41	0	
2025	50	-	50	0	-	-	0	

자료 :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주 : 2025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 그런데, 상기 언급한 2026년도의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요구 내용과 2025년도의 요구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2026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요구내용 비교 >

구 분		내 용
2025 년도	국가교육 발전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u>최초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u> ('25.3. 수립 예정, 2026~2035)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필요
	선행모델 국가 방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교위의 선행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운영·관리 방안 논의
2026 년도	국가교육 발전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u>최초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u> ('26.3. 수립 예정, 2027~2036)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필요
	선행모델 국가 방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교위의 선행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운영·관리 방안 논의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편집

□ 동 사업 중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2026년 3월에 수립될 것을 예정으로 OECD, UNESCO, 유럽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유초중등 분야 교육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와 미래비전 공유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계획 설정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는 IIEP(국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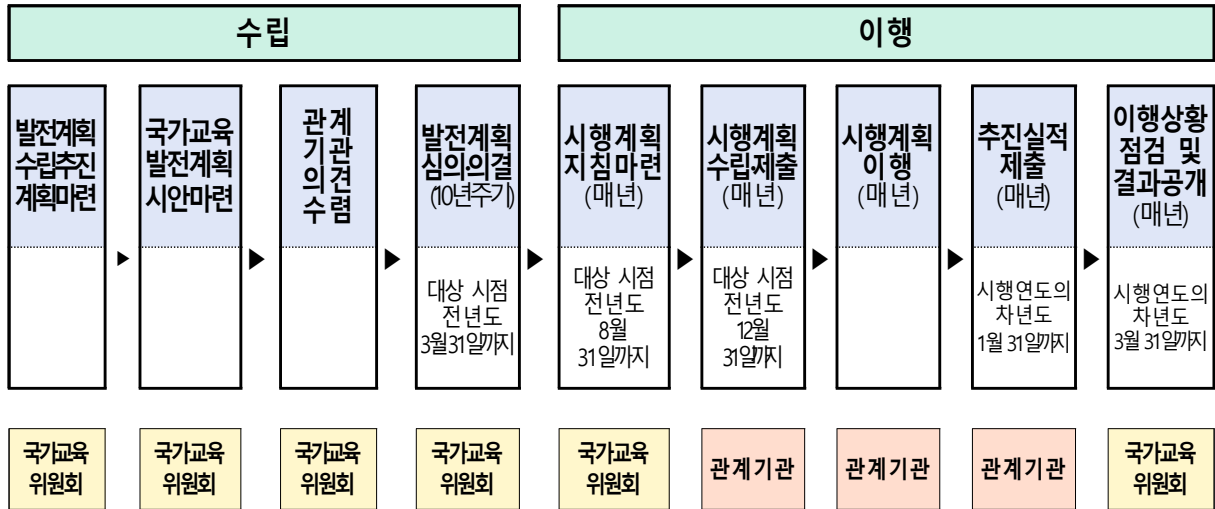
육계획기구) 등 유관 국제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 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며, 시행계획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선진사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선행모델 국가 방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선행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의 운영·관리 방안 논의를 계획하면서, 특히 교육정책의 숙의·합의 과정 모델을 탐색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있음¹¹⁾.
- 이렇듯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25년 10월말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시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까지는 향후 수개월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행계획 마련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¹²⁾.

11)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12) 시안 발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단체, 교육관계자 및 국민 등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하여 수립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주요 절차 >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따라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마련은 2026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마련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동 계획 또한 2025년도 계획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민의견 수렴·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¹³⁾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를 반영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5억 4,000만원) 대비 1억 2,900만원(23.9%) 증액된 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456	△161	△3.5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40	669	129	23.9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75	557	282	102.5
- 국민의견수렴	45	112	67	148.9
- 홍보지원	220	0	△220	순감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내역사업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과 국민의견수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민의견수렴 사업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국민 10만명 동의 등) 시 관련 절차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¹⁴⁾,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4,500만원) 대비 6,700만원(148.9%) 증액된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민의견수렴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40	669	129	19.3
- 국민의견수렴	45	112	67	148.9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2026년 국민의견수렴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견수렴 조정 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용역에 대하여 2024년도의 경우 1억원이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2025년도의 경우에도 1억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2024년도~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수렴 관련 예산 편성내역 >

구 분	산출내역	
	정부안	예산
‘24년 국민의견 수렴 용역	100백만원 50백만 × 연 2회	100백만원 국민의견수렴 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 × 2회)
‘25년 국민의견 수렴 전문 위원회 운영	145.3백만원 국민의견수렴·조정 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 × 2회)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운영 45.3백만원 -참석 수당 27백만원(200천원 × 15명 × 9회) -회의자료 제작 등 9백만원(1백만원 × 9회) -임차료 5.2백만원(1.3백만원 × 4회) -위원 등 여비 2.3백만원(50천원×5명×9회) -업무추진비 1.8백만원(30천원 × 15명 × 4회)	45.3백만원 -회의수당 및 운영비 27백만원(200천원 × 15명 × 9회) -회의자료 제작 등 9백만원(1백만원 × 9회) -임차료 5.2백만원(1.3백만원 × 4회) -위원 등 여비 2.3백만원(50천원 × 5명 × 9회) -업무추진비 1.8백만원(30천원 × 15명 × 4회)
‘26년 국민의견 수렴	111.8백만원 -회의수당 및 운영비 27백만원(200천원 × 15명 × 9회), -임차료 5백만원(1백만원 × 5회) -국민의견수렴·조정 용역 60백만원(30백만원 × 2회) -위원 및 직원 등 여비 4.4백만원(105천원 × 6명 × 7회) -업무추진비 3.3백만원(30천원 × 11회) -회의자료 제작 등 12.7백만원(1.27백만원 × 10회)	-국회 심사 중

자료 :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국가교육위원회) 참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¹⁵⁾, ① 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1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¹⁶⁾.

□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대통령·국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한 사례는 없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사례 역시 없음.

□ 또한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이 해당 플랫폼에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하고 90일 내에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당 요청 취지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절차가 진행되나¹⁷⁾, 2024년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요청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그중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총 6건¹⁸⁾의 요

1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8)

요청 내용	동의기간	동의인원
국민청원을 통한 교육위원회 회부건 신속하게 처리	25. 5. 3. ~ 25. 8. 1.	4명
국가 대학 장려 정책 반성, 대학-사회 간 상생적 발전과	25. 5. 6. ~ 25. 8. 13.	0명

청이 게시되었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¹⁹⁾).

- 이렇듯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시 관련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를 6,000만원 편성하는 등 국민의견수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148.9%(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정책, 현안 등에 대해 연 2회 사회적 합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²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견수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성문고 학생들의 여성혐오적 행위 및 학교의 사건 은폐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25. 5. 27. ~ 25. 8. 24.	1명
학생이 제안하는 교권 존중 실천 방안	25. 6. 5. ~ 25. 9. 2.	1명
전국 학력평가의 내신 평가 반영	25. 6. 5. ~ 25. 9. 2.	1명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 선 정책추진 후 의견수렴	25. 6. 13. ~ 25. 9. 10.	1명

19) 국민의견플랫폼 개통 이전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운영하였는데,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단 5건만 제출되었으며, 모두 국민의견 수렴·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0) 제출 : 국가교육위원회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102-4)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 교육정책 현안 등에 대해 연 2회 사회적 합의 추진